

Ver. 0.5 (2023.11.27)

the way to trust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orea Conformity Laboratory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신청 및 처리규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공기환경센터

☐ ☐ **목 차** ☐ ☐

1. 개 요	1
2. 인증업무 처리절차	1
3. 인증신청 및 제출자료 안내	2
4. 인증 수수료	3
5. 성능평가절차	4
6. 성능인증의 표시	10
7. 인증신청자의 권리와 의무	10
8.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에 대한 절차	11
9. 인증 취소에 대한 사유	12
10. 인증기관 인력 및 연락처 정보	12
별첨 : 1) 공정성 보장 선언	13

1

개요

□ 법적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 ♠ 시행일 : 2019. 08. 15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29호)

- ☞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작·수입할 수 없음.
- ☞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인증대상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로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2

인증업무 처리절차

□ 인증 프로세스



□ 신청 및 접수절차

① 성능인증 신청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인 ‘성능인증 신청서’ 와 다음의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측정기기의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 측정기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 ‘성능인증 신청서’ 별첨 참조

② 상기 ①항의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및 설명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신청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 첨부서류

1. 제조사(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및 제조국 표시)
2. 모델명
3. 기기의 개발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수행하였거나 혹은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주요 성능관련 시험성적서, 실험보고서 또는 제품 사양서(규격서)
 - 크기 분해능(Size Resolution)
 - 정확도(Accuracy)
 - 검출한계(Detection Limit)
 - 최대측정농도(Maximum Mass Concentration)
 - 선형성(Linearity)
 - 응답시간(Response Time)
 - 유량(Flow rate)
4. 주요 부속에 대한 제작사 및 모델명(사진 포함)
 - 파장, 광량 및 연속가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광원 제작사 및 모델명
 - 분해능 및 연속가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광량검출기 제작사 및 모델명
 - 유량 안정성 및 연속가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펌프 제작사 및 모델명
 - 적용 온도 및 가동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히터 제작사 및 모델명
 - 분리 효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입경분리기 제작사 및 모델명
5. 기기 매뉴얼
 - 주기적 측정기 상태 점검방법, 주기적 내부 청소, 핵심부품 교체시기, 데이터 완전성 확인 등 일간/주간/월간/분기별 점검사항 포함
 - 일반적인 작동방법, 데이터 저장 및 확인, 작동 조건, 교정 방법, 기술 사양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매뉴얼
6. 상기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 중 측정기의 설계 및 측정 특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신청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서류를 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신청서류 검토 결과, 인증을 위한 성능평가를 진행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고, 접수처리가 완료된다.
 - ⑤ 접수내역 통보 시, 인증기관은 시료제출 방법과 시기, 등가성 평가를 위한 현장설치 시기를 안내한다.
- ※ 인증신청서 및 상세안내는 우리원 홈페이지(www.kcl.re.kr) ‘사업안내’ 메뉴=> ‘인증/심사’ 메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 메뉴 참조

4 인증 수수료

- ① 성능인증 수수료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환경부 고시 제2019-539호)’에 따른 법정 수수료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수수료(원)	비 고
4,271,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반복재현성 항목 : 822,000원 -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항목 : 3,449,000원

- ② 성능인증 신청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환경부 고시 제2019-539호)’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납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류 검토를 진행한다.
- ③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환경부 고시 제2019-539호)’ 제4조(수수료 반환)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성능인증기관의 사유로 성능인증 업무 수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체를 반환
 -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위한 평가에 착수하기 전에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체를 반환
 -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그 등급이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평가를 위한 수수료(3,449,000원)를 반환
- ④ 인증신청내용 검토 중, 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측정기기로 판단되는 경우, 연구원 규정에 따라 과오납 처리하여 반환할 수 있다.

☞ 기업은행 497-052789-04-821 (예금주:(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오창)

※ 입금 시, 성능인증신청서에 작성한 상호(사업장명)으로 입금.

□ 성능평가 등급

- 성능인증평가는 실내시험실에서의 시험챔버평가(반복재현성)와 실외 시험동에서의 등가성 평가(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로 구분한다.
- 성능인증 등급은 다음의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 평가항목별로 성능인증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항목의 결과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을 결정
 -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항목은 평가제의

등급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1등급	80% 초과	80% 초과	80% 초과	80% 초과	0.8 초과
등급 외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0.8 이하

- 성능인증 신청인은 성능인증기관에 4대의 성능인증 평가대상 간이측정기를 제공하여야 하며, 성능인증기관은 이 중 1대는 시험챔버평가, 3대의 측정기는 등가성 평가에 사용한다.

□ 성능평가 방법

- 성능평가 방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과학원고시)’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① 실내챔버평가

- 가. 시험에 앞서 성능인증 평가대상 간이측정기는 실험실 평가에 사용하는 기준측정기와 예비비교시험을 통해 동일한 입자 농도 측정값을 표출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간이측정기 내부 파라미터를 조정한다.
- 나. 시험챔버 내부에 HEPA 필터를 통해 입자가 제거된 청정공기를 이용하여 환기하며 챔버 내부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5 \mu\text{g}/\text{m}^3$ 이하가 될 때까지 지속한다.
- 다. 시험표준입자를 발생 시킨 후 시험챔버 내부에 주입하고 목표 농도에 도달하도록 제어하되 초기농도는 $200 \mu\text{g}/\text{m}^3$ 을 넘을 수 없다.
- 라. $150 \mu\text{g}/\text{m}^3$ 이하 범위에서 지정된 5개의 균등구간 각각의 농도에서의 허용범위는 기준농도 $\pm 10\%$ 또는 $\pm 5 \mu\text{g}/\text{m}^3$ 중 큰 값으로 한다. 5개의 균등구간은 $100 \mu\text{g}/\text{m}^3 \sim 110 \mu\text{g}/\text{m}^3$, $75 \mu\text{g}/\text{m}^3 \sim 85 \mu\text{g}/\text{m}^3$, $50 \mu\text{g}/\text{m}^3 \sim 60 \mu\text{g}/\text{m}^3$, $25 \mu\text{g}/\text{m}^3 \sim$

35 $\mu\text{g}/\text{m}^3$, 5 $\mu\text{g}/\text{m}^3$ 미만으로 한다.

마. 각 미세먼지 농도 구간에서 5분 동안 측정한 평균값을 취득한다.

바. 라목의 지정된 5단계의 각 농도구간에서 5분 동안 측정 및 취득한 자료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선형 회귀직선 $y = ax$ 를 구한다.

사. 다목~바목 과정을 3회 반복 수행한다.

아. 측정차수별 선형 회귀직선 기울기의 오차를 구하고 반복재현성을 평가하여 가장 작은 값으로 등급을 산정한다.

$$|d_i| = \left| \frac{a_i - \bar{a}}{\bar{a}} \right|$$

여기서, i : 측정차수(1, 2, 3)

a_i : 측정차수(i)의 기울기

\bar{a} : 전체 측정차수의 기울기 평균

$|d_i|$: 측정차수(i)의 !오차

$$\text{반복재현성}_i = (1 - |d_i|) \times 100 (\%)$$



<실내챔버시스템>



<입자발생기>

<기준입자계측기>



<운용프로그램 S/W>

② 등가성 평가



<시료채취장치 및 연속자동측정기>



<간이측정기 설치장소>



<자동칭량시스템>

주요 장비구성



가. 성능인증 평가대상 간이측정기 사전준비 및 예비측정

- 1) 성능인증 평가대상 간이측정기 평가에 앞서 지정된 시험장소에 설치하고 사전 운영을 통해 기기의 상태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시료도입부(Inlet) 및 광산란검출기(phototube) 등을 정비하고 측정기의 기밀성 점검과 유량교정 등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해 내부적인 점검 및 교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기관에서는 최소 3일간의 사전준비기간을 배정한다.

- 2) 최소 3일간의 사전준비 종료 이후, Class I¹⁾, Class II²⁾ 및 성능인증 평가대상 간이측정기를 동시 운영하는 예비측정을 수행한다.

※ 예비측정의 목적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량교정파라미터(k-factor)를 교정하기 위해서이다. 성능인증기관은 3일에 걸쳐 Class II 기준측정기의 시간측정결과를 제공하여 간이측정기의 질량교정 파라미터(k-factor)를 교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Class I 기준측정기관 국가기준측정시스템(NRM, National Reference Methods system)과 비교시험을 통해 소급성이 확보된 미세먼지 시료채취장치를 말한다.

2) Class II 기준측정기관 Class I과 비교시험을 통해 소급성이 확보된 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기를 말한다.

나. 성능인증 평가대상 간이측정기 등가성평가(인증기관 수행)

- 1) 예비측정이 종료된 후 3대의 Class I 기준측정기, 3대의 Class II 기준측정기 및 3대의 성능인증 평가대상 간이측정기를 정상가동하여 등가성평가를 수행한다.
- 2) Class I 기준측정기는 일 23시간 연속가동하여야 하며 1시간동안 필터의 교체 및 측정기의 점검을 수행토록 한다. Class II 기준측정기는 Class I 기준측정기와 동일한 기간동안 연속 운전되어야 한다.

※ Class I 기준측정기의 필터 교체 및 점검시간 동안,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 수집 및 소모품 교체는 인증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검사의뢰자가 의뢰한 측정기의 소모품 교체 등을 할 수 있다.

- 3) 성능인증 평가대상 간이측정기의 경우 자료는 기기내부에 저장되어야 하며, 만약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료수집과 자료처리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측정기 외부에 직접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4) 등가성평가는 최소 14일 동안 수행되어야 한다. 14일간 동안 Class I 기준측정기는 14개의 일평균자료(23시간), Class II 기준측정기는 322개의 시간평균자료(14일 × 23시간)가 수집되어야 한다.

간이측정기 또한 시간평균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나 만약 간이측정기가 시간평균자료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시간평균자료의 산출 방식을 검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4-1) Class I과 Class II 기준측정기의 측정자료는 각 3대 기준측정기의 동일한 측정기간에 대한 측정자료를 평균하여 사용한다.
- 4-2) Class I 또는 Class II 기준측정기 중 1대가 이상이 있는 경우, 2대 기준측정기의 동일한 측정기간에 대한 측정결과를 평균하여 사용 할 수 있으나, 연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시험기간이 연장된다.
- 4-3) 2대 이상의 기준측정기가 이상이 있는 경우, 이상 기간만큼 시험기간을 연장하여 14일간의 측정자료를 수집한다.
- 4-4) 성능인증기관은 4-2), 4-3)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측정기의 이상 및 측정 데이터를 모두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5) Class II 기준측정기 측정결과 322개 중 농도가 $40 \mu\text{g}/\text{m}^3$ 을 초과하는 고농도 결과가 최소 16개 이상 수집되어야만 한다. 만약 14일의 시험기간 동안 16개 이상의 $40 \mu\text{g}/\text{m}^3$ 농도가 수집되지 않았을 경우 시험기간을 1회(14일) 연장하고, 전체 기간 중 $40 \mu\text{g}/\text{m}^3$ 초과하는 농도가 최소 8개 이상 수집될 경우 시험을 종료한다.

또한 낮은 농도에서도 간이측정기의 인증 세부기준인 정확도와 결정계수 값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Class I 기준측정기의 농도가 3 $\mu\text{g}/\text{m}^3$ 이하인 경우와 Class II 기준측정기의 농도가 5 $\mu\text{g}/\text{m}^3$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으나 총 시험일수는 최소 14일을 만족하여야 한다.

6) 성능인증기관은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를 구하고, 등급을 결정한다.

6-1) 초미세먼지(PM-2.5) 농도의 최종 유효자리수는 1 $\mu\text{g}/\text{m}^3$ 이므로, 유효자리수 다음인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2)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의 유효자리수는 소수 첫째자리이므로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3) 결정계수의 유효자리수는 소수 둘째자리이므로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4) 상대정밀도

$$P_j = \sqrt{\frac{\sum_{i=1}^3 C_{i,j}^2 - \frac{1}{3}[\sum_{i=1}^3 C_{i,j}]^2}{2}}$$

여기서, j : 측정기간(1, 2, ..., 322)

i : 측정기 번호(1, 2, 3)

$C_{i,j}$: 측정기간(j) 동안 성능인증 간이측정기의 농도

P_j : 측정기간(j) 동안 성능인증 간이측정기의 표준편차

$$RP_j = \frac{P_j}{C_j}$$

여기서, j : 측정기간(1, 2, ..., 322)

RP_j : 측정기간(j) 동안 성능인증 간이측정기의 상대표준편차

$$\text{상대정밀도} = \left(1 - \frac{1}{J} \sum_{j=1}^J RP_j\right) \times 100 (\%)$$

6-5) 자료획득률

성능인증 간이측정기 3대의 자료획득률을 구한 뒤, 가장 작은 값으로 평가한다.

$$\text{자료획득률} = \frac{J_{C,i}}{J_R} \times 100 (\%)$$

여기서, i : 측정기 번호(1, 2, 3)

$J_{C,i}$: 성능인증 간이측정기(i)의 자료 수

J_R : 기준측정기의 자료 수

6-6) 정확도

$$\bar{C}_j = \frac{1}{3} \sum_{i=1}^3 C_{i,j}$$

여기서, j : 측정기간(1, 2, ..., 322)

i : 측정기 번호(1, 2, 3)

\bar{C}_j : 측정기간(j) 동안 성능인증 간이측정기의 평균농도

$$|d_j| = \left| \frac{\bar{C}_j - \bar{R}_j}{\bar{R}_j} \right|$$

여기서, \bar{R}_j : 측정기간(j) 동안 기준측정기의 평균농도

\bar{C}_j : 측정기간(j) 동안 성능인증 간이측정기의 평균농도

$|d_j|$: 측정기간(j) 동안 !오차!

$$\text{정확도} = \left(1 - \frac{1}{J} \sum_{j=1}^J |d_j| \right) \times 100 (\%)$$

6-7) 결정계수(r^2)

$$r = \frac{\sum_{j=1}^J (\bar{R}_j - \bar{R})(\bar{C}_j - \bar{C})}{\sqrt{\sum_{j=1}^J (\bar{R}_j - \bar{R})^2 \sum_{j=1}^J (\bar{C}_j - \bar{C})^2}}$$

여기서, \bar{R} : 전체 측정기간 동안 기준측정기의 평균농도

\bar{C} : 전체 측정기간 동안 평가대상 측정기의 평균농도

r : 상관계수

$$\text{결정계수 } r^2 = r \times r$$

□ 성능평가 결과보고

- 우리원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평가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 성능인증평가 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www.kcl.re.kr)에 공개됩니다.
☞ ‘사업안내’ 메뉴=> ‘인증/심사’ 메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 메뉴
- 성능인증서와 성능인증마크의 QR코드에는 간이측정기 사진과 성능인증 등급 평가 항목인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가 표시됩니다.

6

성능인증의 표시

-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간이측정기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표지를 간이측정기 전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QR코드는 인증기관이 제공하며, 도안은 인증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다. 인증기관이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성능인증 등급의 기준이 변경되거나, 다음의 사유로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등급표지와 내용을 수정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라도 소재·부품·프로그램의 변경이 성능인증 평가결과(실내챔버평가 및 등가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성능인증평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7

인증신청자의 권리와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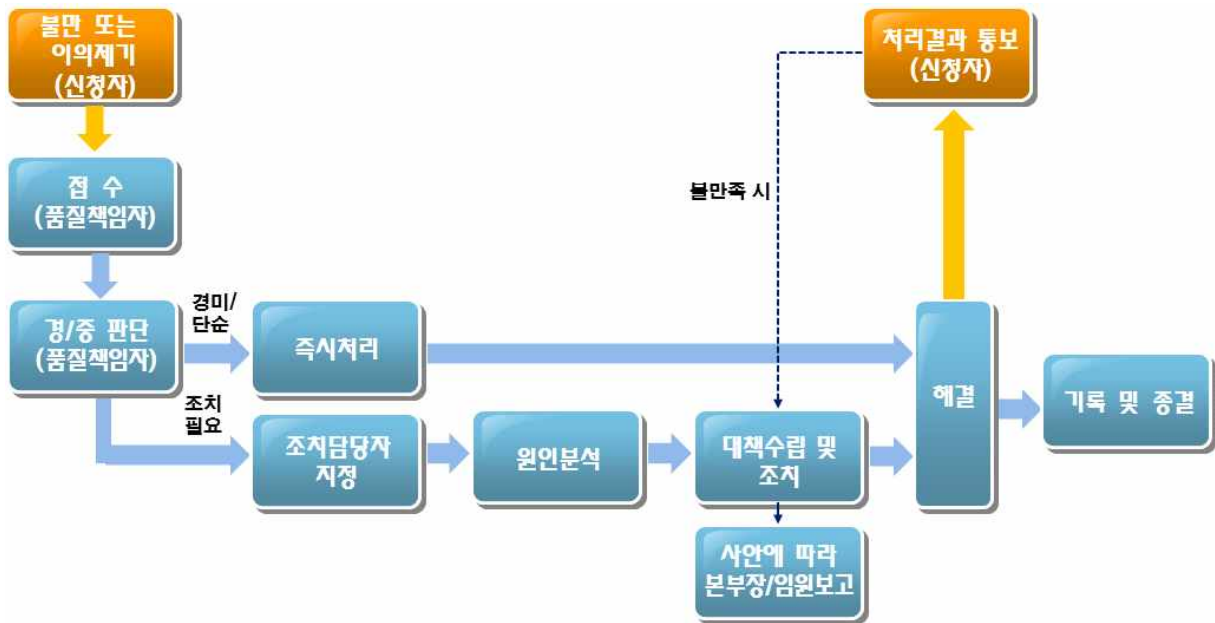
- ① 인증신청자는 성능인증을 위한 평가에 착수하기 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한 인증수수료 전체를 반환받을 수 있다.
단, 평가에 착수한 경우, 인증수수료를 반환할 수 없다.
- ② 성능인증 신청 후, 신청자가 신청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성능인증 평가에 착수하기 전 : 기존 인증신청 내용을 철회하고 재신청
 - 성능인증 평가에 착수한 후 : 변경사항과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관련서류를 서면으

로 인증신청자에게 요청하며, 변경된 사항의 소재·구조·프로그램 등이 성능인증 평가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만, 변경사항 승인

- ③ 성능인증 신청인은 시험기간 동안 성능인증기관의 기술지원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 ④ 성능인증 등급표지는 인증된 제품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기관이 인증받은 것으로 홍보, 선전할 수 없다. 또한, 서류, 홍보자료, 명함, 견적서 등에 성능인증등급표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⑤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위임한 기관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 측정기와 불특정 다수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측정기 현황(성능, 정도관리 상태 등)에 대해 사후조사 할 수 있다.
- ⑥ 인증취소 사유(본 규정 제9조 참조)가 발생된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되며 규제기관에게 보고 및 홈페이지에 인증취소 결과가 공지된다.
- ⑦ 성능평가 종료 후에는 인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직접 반환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폐기될 수 있다.

8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에 대한 절차

○ 불만³⁾ 및 이의제기⁴⁾ 프로세스



○ 접수처 : KCL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시스템 품질책임자(지창민 책임연구원)
 - Tel : 043-753-3102, Fax : 043-753-3109, E-mail : kjich@kcl.re.kr

3) 불만(Complaint) : 신청자가 인증기관 활동과 관련하여 답변을 기대하면서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

4) 이의제기(Appeal) : 신청자가 인증기관이 내린 결정(등급판정)에 대한 재고(Reconsideration)를 요청하는 것

9

인증취소에 대한 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하고 즉시 홈페이지에 취소내용을 게시한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 ② 성능인증시험에 적용된 소재·구조·프로그램 등이 변경되어 간이측정기의 성능이 등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③ 구매자가 오해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인증서 및 성능인증 등급표지를 사용한 경우

10

인증기관 인력 및 연락처 정보

- 접수 및 성능평가 : 이민정 선임연구원
☞ 연락처 : Tel 043-753-3107, Fax 043-753-3109 E-mail : leemj@kcl.re.kr
- 인증책임자 : 공기환경센터 이상구 책임연구원
☞ 연락처 : Tel 043-753-3180, Fax 043-753-3109 E-mail : oh239@kcl.re.kr
- 품질책임자 : 공기환경센터 지창민 센터장
☞ 연락처 : Tel 043-753-3182, Fax 043-753-3109 E-mail : kjich@kcl.re.kr
- 접수증 및 계산서 : 배소영 연구원 (043-753-3100) E-mail : soyeongbae@kcl.re.kr
☞ 수수료 입금계좌 : 기업은행 497-052789-04-821 (예금주:(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오창)

▶ 오시는 곳) 충북 진천군 덕산면 여안로 13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공기환경센터 (충북혁신도시 내, 서전고등학교 옆)

- 평택제천고속도로 '금왕꽃동네 IC'에서 약 7km
- 중부고속도로 '진천IC'에서 약 6km



공평성 보장 선언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업무’ 관련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성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업무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인증업무는 공평하게 수행하고 신청업체 규모 등 어떠한 이유로든 인증신청을 제한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인증업무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 압력을 허용하지 않으며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지속적으로 인증기관의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한다. 이는 인증기관 활동, 인증기관과 신청기관의 관계, 인증기관 직원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를 포함한다.
4. 우리는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가 파악되면, 리스크를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5. 우리는 자체개발 하였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하여 개발한 간이측정기에 대하여는 인증신청을 받지 않는다.
6. 간이측정기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한 경우,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는 인증신청을 받지 않는다.
7. 인증업무 수행 인력은 자문을 제공하는 특정 조직의 활동과 연계하여 마케팅 또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

2019. 08. 07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기관 운영책임자